

생활개혁 중점과제
「고운말 쓰기」 교재

바람직한 토론문화

문화체육부

머리말

오늘날, 사회는 매우 전문화·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정보를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가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토론은 이러한 교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론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좁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일을 토론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며 나아가 참다운 발전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넓게는 사회와 국가도 건전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한층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 토론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모을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제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발전적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해 정부는 생활개혁 3대 중점 과제로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와 더불어 ‘고운말 쓰기’를 선정하였고, 그 가운데 주요 업무로 ‘토론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민 스스로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정부도 이에

맞추어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뿌리 내리고자 이 작은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자는 문화학교나 시민대학, 주민대학 그리고 신문사, 백화점, 기업체 등의 교양 교재로 사용 되기를 바라면서 제작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실천하는 선진 문화 의식을 지닐 때 세계화도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 책자가 널리 읽혀 국민들의 토론 문화 생활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고운말 쓰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 책자 발간에 애써주신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문화체육부장관

차 례

토론의 실태와 방법 / 전영우	1
토론의 언어와 표현 / 박갑수	19
토론과 회의 진행 방법 / 이진종	31

토론의 실태와 방법

전 영 우

1. 머리말

1896년의 협성회 토론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서구식 토론의 기원이 되므로 1995년은 토론 문화가 유입된지 백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기원전 9백년의 사람인 호메로스는 이미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토론을 터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분명히 호메로스는 토론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하였고, 토론자와 청중의 상호 관련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기원전 5백년경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고르기아스(Gorgias), 그리고 이소크라테스(Isocrates) 등은 토론법의 효과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옹호하였다. 토론 교육을 통하여 이들은 수사학 훈련과 시민 정신 고취에 역점을 두었다.

기원후 1천4백년에 영국에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사이에 공식 토론이 벌어졌고, 1천8백년에는 미국에서 대학 간 토론이, 그리고 1877년에는 일본에서 대학 간 토론이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1896년에 ‘국문과 한문을 섞어 씀이 가함’이란 논제를 가지고 협성회가 벌인 토론이 첫번째 공식 기록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토론의 실태는 어떠한가?

첫째, 공식 토론보다 비공식 토론이 일상화되고 있다.

둘째, 이른바 토론회가 문제에 대한 해결안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논제에 대한 찬반, 긍부정(肯否定), 가부(可否), 적부(適否), 선부(善否) 등 토론자의 입장 표명이 불분명하다.

넷째, 증거와 논거의 뒷받침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 참가자에게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이 부족하다.

다섯째, 논제 설정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사실, 가치, 정책 등으로 논제의 유형을 한정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확실하다.

여섯째, 상대편 주장을 경청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

일곱째, 의사 소통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여덟째, 토론 참가자에게 격한 감정이 앞서고 냉철한 이성이 뒤선다.

아홉째, 토론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

열째, 공적인 경우는 물론, 사적인 경우에도 토론자의 설명과 설득 화법이 세련되어 있지 않다.

열한째, ‘토의’와 ‘토론’을 혼동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

2. 토의에 대하여

(1) 토의란 무엇인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을 논의하는 학법이 토의이다. 즉 참가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의견, 사실,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감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좀더 깊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문제의 가치와 의미도 파악하게 된다. 토의는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의견의 교류를 통해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므로, 다수결이나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논파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공정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며, 가능한 모든 안이 검토된다. 즉 토의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드러내고 이를 정리하여 집단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집단 사고의 과정이다.

토의는 조직이나 집단에서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비록 참가자들이 완전한 동의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문제점에 접근하고 그 적절한 해결책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토의의 유형

① 원탁 토의

탁자 주위에 모일 수 있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토의이다. 참가자들이 서열에 관계없이 되도록 둉글게 둘러앉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원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원탁에 둘러앉은 소집단은 대개 비공식적인 성격이어서 사회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원탁 토의는 규모가 작고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고, 참가자 모두에게 여러 차례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며, 집단 행동이 쉽게 결정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 토의는 대규모 집단에 부적합하고, 참가자가 토의에 익숙하지 못하면 산만하게 되기 쉽고,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 원탁 토의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 해결 토의로 알려져 있다.

② 패널

패널(panel)은 배심 토의라고도 한다. 특정 문제를 해결 또는 해명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다. 선정된 4~6명의 배심원(panelist)들이 청중 앞에서 각자의 지식, 견문, 정보 등을 발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협력적으로 숙의를 전개해 나가는 공동 토의이다.

사회자는 토의 진행 중에 각 배심원에게 고르게 발언 기회를 주고, 필요에 따라 발언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석을 붙이며,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질문 또는 해설을 한다. 배심원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청중이 질문을 하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하게 답변한다. 청중도 주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자의 승인을 얻어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한다. 청중의 발언은 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며 짧은 시간 안에 명료하게 말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패널은 의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의제는 찬반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 각도에서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③ 심포지엄

심포지엄(symposium)은 특정한 주제를 놓고 각기 다른 방면의 전문가 3~6명이 자기 의견을 발표한 다음 청중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응답하는 말하기 형식이다. 전문가와 권위자가 공통의 주제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청중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몇 가지의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각 연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배분되며, 참가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정한 시간 안에 의견을 발표해야 하며,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에는 발언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심포지엄의 사회자는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고 그 배경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 연사를 소개하고, 각 연사의 발언을 요약하며, 각 연사의 발언에 대하여 상호 관련과 위치를 밝혀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연사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야 하며 전체 예정 시간의 반쯤은 청중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청중의 질문은 되도록 짧아야 하며, 사회자는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수용하여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토의를 마칠 때, 사회자는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토의의 의의를 확인한 다음 끝을 맺는다.

심포지엄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토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의견 발표로 끝나버릴 염려가 있다.

④ 포럼

포럼(forum)은 원래 고대 로마에서 공적인 집회가 열리던 ‘광장’을 의미하였으나, 그 후 공공 광장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공개 토의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패널에서는 배심원들의 토의가 끝난 후에 청중들의 질의 응답이 뒤따르고, 심포지엄에서는 연사들의 강연이 끝난 후에 청중들의 질의 응답이 제기되는데 비하여, 포럼은 처음부터 청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토의이다. 따라서 포럼에서는 강연이나 연설은 하지 않는다.

청중이 질문할 때에는 일정한 격식에 구애받지 않으나, 질문이 긴 연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요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혼자서 질문을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자는 청중에게 질의 응답의 규정을 미리 설명하고, 청중의 질문을 해당 연사에게 돌리기에 앞서 재차 반복해서 들려주며, 질문 시간을 조정한다. 또 사회자는 산회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산회 시간 전이라도 포럼에 대한 청중의 관심이 감소하면 곧 산회한다. 토의의 성공 여부는 토의의 주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 정도에 달려 있으며, 사회자의 능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토의가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진행해야 하며,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3. 토론에 대하여

(1) 토론이란 무엇인가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여 좋은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화법 형식이 토의(discussion)요, 사리의 본질을 따지되 상호간에 극단까지 논의하는 화법 형식이 토론(debate)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보면 화법의 두 가지 형식을 분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사실 토의와 토론이 본래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가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아이디어, 사실, 정보 등을 공유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토의’ 형식을 이해하게 되고, 해결 방안을 결

정하는 방편으로 ‘토론’ 형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토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의 모색을 시도하고, 토론은 이미 나와 있는 해결안에 대한 찬반 혹은 가부의 결정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어진 현안에 대하여 회의 참가자가 난상 토의를 거쳐 해결안을 모색하고, 다시 해결안을 놓고 가부 간에 진지한 토론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토론을 토의에 견주어 설명하면, 토의는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도이고 자유스러운 논의이며 토론의 전단계인데 비하여, 토론은 해답을 상대편에게 설득하여 납득시키는 시도이고 규칙에 의거하는 논의이며 토의의 후단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토론은 한 가지 논제(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두 팀 사이에 실시하되, 인원, 진행 방법, 심사 방법 등의 규칙을 준수하고, 논의는 단정이 아니라 반드시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두 팀의 우열을 가리는 심사 위원의 판정이 따른다. 궁극적으로 토론의 목적은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진리의 탐구 등에 있다.

(2) 토론의 유형

토론에는 사회 토론과 교육 토론이 있다. 사회 토론은 토론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때를 가리키고, 교육 토론은 토론의 영향이 다만 교육적인 효과로 국한할 때를 가리킨다.

① 사회 토론

㉠ 특별 토론

특별한 정황에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공식 토론이다. 1960년과 198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유세의 일환으로 케네디(John F. Kennedy) 대 닉슨(Richard M. Nixon), 카터(Jimmy Carter) 대 레이건(Ronald Reagan) 후보 간에 각각 실시된 텔레비전 토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공식 토론

법정 토론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실 심리와 법률 심리가 전개된다. 하나의 논제(소송)를 놓고,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측) 간에, 규칙(소송 법규)에 따라, 검증(심리)에 기초를 두고, 승부의 판정(판결)을 내린다.

㉢ 비공식 토론

규칙 따위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일반 사회와 방송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이에 속한다.

㉣ 의회 토론

의회의 의사 진행 규칙에 따라 행한다.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한 가결, 수정, 부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 토론

㉠ 전통형

긍정측과 부정측 각각 2인제가 원칙이고, 양측의 사용 시간이 균등해야 하며 처음과 끝에 반드시 긍정측이 발언을 하게 된다.

이 '점은 심문형 토론 역시 원칙에서 동일하다.'

(입론)

긍정측 첫번째 입론 10분

부정측 첫번째 입론 10분

긍정측 두번째 입론 10분

부정측 두번째 입론 10분

(반론)

부정측 첫번째 반론 5분

긍정측 첫번째 반론 5분

부정측 두번째 반론 5분

긍정측 두번째 반론 5분

⑤ 심문형

(입론)

긍정측 첫번째 입론 10분

부정측 심문 3분

부정측 첫번째 입론 10분

긍정측 심문 3분

긍정측 두번째 입론 10분

부정측 심문 3분

부정측 두번째 입론 10분

긍정측 심문 3분

(반론)

부정측 첫번째 반론	5분
긍정측 첫번째 반론	5분
부정측 두번째 반론	5분
긍정측 두번째 반론	5분

(3) 토론의 논제

토론의 논제는 사실에 관한 것, 가치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어느 유형의 논제를 선택하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찬반 양론이 성립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결과가 확정된 것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자전한다.” 등은 논제가 될 수 없다.

둘째, 과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토론을 탁구에 비유한다면 논제는 탁구공이다. 탁구에서 2개, 3개의 공으로 동시에 경기를 할 수 없듯이, 한 토론에서 2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다룰 수 없다. “학생 회장은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와 같은 논제에는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전자와 후자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괄 토론을 할 수 없다.

셋째, 표현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감정적 표현이 포함된 논제는 긍정측이나 부정측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비인도적인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은 논제는 청

중에게 긍정측에 유리한 선입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학생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학생회 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조처가 포함된 논제로 바꾸어야 한다. 또,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용어 등에 불명료한 것이 있으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석에 일치를 보아야 한다.

다섯째, 토론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자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는 것이 토론의 근본 원칙이다. 토론자는 자기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갖는다.

4. 한국 토론의 여명기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로 이어지는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 중심은 배재학당이었다. 1896년 1월 서재필은 미국에서 귀국하자 곧 배재학당에서 강의를 맡았고, 1896년 2월 중순 이래 매주 토요일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과 교과목으로 강의하는 회의법에 대한 그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심어주는 구실을 하였다. 학생 단체인 협성회는 이와 같은 기초 작업 위에 태동하였다. 배재학당에서 그는 역사, 지리, 경제, 정치, 종교 등을 강의하였는데 학생들은 크게 감화를 받았다.

한편, 그는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지도하였다. 아펜젤러(H. G. Appenzeller) 학당장 초청으로 일주일에 2시간 강

의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개화 정신과 독립 정신을 배양해 주었다. 서재필의 학생 지도 가운데 특기할 자료는 ‘만국 회의 통상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장차 국회를 두어 헌법을 공포해 입헌 정치를 하려는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생회를 조직케 한 바 그것이 협성회이다. 1896년 협성회를 발기시키고, 여기서 회의 진행법을 가르쳤다. 동의, 재청, 개의 등 회의 용어가 이 때 번역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회의 용어의 기원이 된 것이다. 그 전에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현대 회의법이 거의 없고 조직화된 회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차 국회를 두려는 사전 제도로 정부에서 중추원을 구성하였는데 장차 활동할 대의원을 양성하려는 의도에서 협성회를 조직한 것이다. 배재학당 학생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이 되고, 관리들의 입회도 가능하였다. 일반 시민이면 역시 입회가 허용되어 전체 회원 수는 6백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중 학생은 2백 명内外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일부는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협성회에 그대로 남아 활동하였다. 협성회는 독자적으로 ‘의회 규칙’ 적용을 위한 실질 훈련을 쌓아 나갔다. 당시 독립협회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매주 토요일 발행하고, ‘만국 회의 통상 규칙’을 발간 보급함으로써 집회와 결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활용하게 하였다.

서재필은 협성회 주최로 매주 1회 정도 공식 토론회를 열고 변론법을 지도하였으며, 구변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이 연설을 통해 민중 계몽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다.

초기에 다루어진 토론 논제는 거의 일상적인 국민의 당면 문제로 국한된다. 배재학당에서 발행한 협성회 회보 2호에 게재된 1897년의 토론 논제는 다음과 같다.

국문과 한문을 섞어 씀에 대하여, 학원들은 양복을 입음에 대하여,
아내와 자매와 딸을 각종 학문으로 교육함에 대하여, 학원들은 매일
운동함에 대하여, 여인들을 내외시키는 데 대하여, 국중의 도로를 수
선함에 대하여, 우리 나라 종교를 예수교로 함에 대하여, 노비를 속
량함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 철도를 놓는 데 대하여, 우리 회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가로 연설을 함에 대하여…….

서재필의 지도로 토론회가 열리고, 여기서 국민의 일상 문제
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토론 참가자는 물론, 방청자에게까지 개
화 계몽 사상이 폭넓게 삼투되어 들어갔다. 토론회는 협성회 규
칙(1896년 11월)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협성회 규칙에 의하면 회
원은 초기에 배재학당 학원으로 가입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
고, 임원의 정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2인, 회계 2인,
사찰 2인, 사적 2인, 제의 3인, 정연의(正演議) 2인, 좌연의(佐演
議) 2인이다.

정연의는 개회시에 회장의 지휘를 받아 주어진 문제로 연설
을 하되 가부 양편이 반대로 변론하고, 그 뒤에 좌연의와 다른
회원이 연설을 마치면 다시 정연의 두 사람이 연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좌연의는 직무가 정연의와 동일하되 다만 정연의

가 연설을 끝낸 뒤에 정연의 연설을 보조해 연설한다.

후에 회장이 양변 의사의 가부를 질문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이는 고성으로 말하기를 ‘가(可)!’라 하고,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고성으로 말하기를 ‘부(否)!’라 하여 가부 다수로 의사를 결정하되, 만일 가부 다수가 미상하면 회장이 가타 하는 이를 기립하라 하여 그 수를 세고 앉힌 후에 부타 하는 이를 또 기립하라 하여 그 수를 센 다음에 다수를 쫓아 결정하고, 만일 양변 가부수가 상등하면 회장의 가부를 인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의사를 결정한 후에 양변 연설의 선부(善否)를 회장이 회중에 물어 가부 다수로 판정한다.

창립 당시 간부진을 살펴보면 회장 양홍묵, 부회장 노병선, 서기 이승만, 김연근, 회계 윤창열, 김혁수, 사찰 이익채, 임인호, 사적 주상호 등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학생 단체인 협성회가 조직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토론회 개최, 가두 연설회 개최, 기관지 발행이 가장 대표적이다. 윤치호가 협성회를 토론회(debating society)라 부른 점을 보면 협성회의 토론은 매우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협성회의 공식 토론은 모두 50회를 기록하는 한편, 독립협회는 공식 토론 35회를 기록하고 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이듬해인 1897년 8월에 토론회 규칙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공식 토론을 전개하였다.

1897년 11월 1일에 실시한 독립협회 공식 토론회의 진행 절

차를 항목으로 살펴본다.

- ①회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호명이 있었고,
 - ②지난 번 토론회의 경과에 대한 기록 확인이 있었으며,
 - ③내빈과 신입 회원을 회중에게 소개한 뒤에,
 - ④회장이 토론의 논제를 선언하였다. 논제는 “동포 형제 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였다.
 - ⑤우의(右議) 2인이 가편 토론자로 나오고, 좌의(左議) 2인이 부편 토론자로 나와 각각 양변에서 찬반 토론을 벌인 다음에,
 - ⑥회중에서 토론자가 나와 자유롭게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반대 토론자가 “용역 서비스는 필요한 제도요, 노비 제도가 바로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⑦윤치호와 서재필이 지도적인 입장에 서서 노비 제도가 갖는 비인간성의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 ⑧논제에 대한 회중 의견을 투표에 부친 결과 논제 찬성이 의결되었으며,
 - ⑨논제에 찬성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노비를 모두 해방하는 동의를 내고 이것이 가결됨으로써 토론회를 끝냈다.
- 협성회 규칙과 독립협회 토론회 규칙은 윤치호가 초역한 ‘의회 통용 규칙’에 준거한 것이요, 의회 통용 규칙은 헨리 로버트 (Henry M. Robert)의 ‘의회 규칙 편람’을 근거로 초역한 것이다. 독립협회 토론회 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
방책, 나라를 부강케 하는 방책은 상무가 제일, 도적을 금하는 데는
길가에 밤이면 등불을 켜는 것이 긴요함, 부녀를 교육하는 것이 의
리상과 경제상에 마땅함, 국문을 한문보다 더 쓰는 것이 인민 교육
을 성대케 하는 데 유조하다, 국중에 상무를 흥케 하고 자주권을 견
고케 하는 데는 경편하고 실로 보배로운 화폐를 그 나라에서 쓰는
것이 긴요하다, 동포 형제 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
에 대단히 불가하다, 대한이 세계 각국과 비견하여 제일 상등국이
되려면 근일 새 법과 새 학문을 배우지 말고 한당 풍속과 예절을 본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병어리와 판수들을 정부에서 재예로 교육하는
것이 마땅하다…….

5. 마 무 리

토론은 어떤 문제나 제안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
진 사람들이 각각 논거를 발표하고, 상대편의 논거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혀 나가는 화법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토론은 양방이 각각 자신의 긍정하는 사
실, 가치,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폄고 상대편의 주장
을 논파하려는 의도로 행한다. 그러므로 토론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되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토론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어떤 한쪽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

는 것보다 토론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 토론을 통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고, 공공 문제나 시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주어진 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명료하게 사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론의 메리트(merit)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토론자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배양한다.

둘째, 토론자의 비판적인 경청력을 신장한다.

셋째, 토론자의 발표 능력을 향상한다.

넷째, 토론자의 논제 분석과 자료 조사 능력을 향상한다.

다섯째, 우리의 의견 조정과 교섭 능력이 증대한다.

여섯째, 우리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일곱째, 우리의 의사 소통 능력을 세계화할 수 있다.

토론의 언어와 표현

박 갑 수

1. 서 론

민주 사회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발표의 대표적인 수단이 토의(討議)와 토론(討論)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음성 언어의 표현 수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학교 교육에서 음성 언어 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의와 토론의 개념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방송의 ‘심야 토론’은 토론 아닌 토의에 속할 것이다.

토론은 광의의 토의(discussion)에 속하는 것으로 협의의 토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토의는 ‘일치를 보기 위하여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를 가리키고, 토론(debate)은 ‘대립되는 사실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토론은 말을 주고 받음에 의해 대립점이 분명해지고, 지적인 주장과 반론에 의해 올바른 결론의 일치를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토론의 논제는 사실에 관한 명제와 정책에 관한 명제로 나뉘며, 이들은 명료하고 한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토론의 언어는 한마디로 지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토론을 토론답게 이끄

는 토론의 언어와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에 올바른 토론 문화를 위해 토론의 언어와 표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바람직한 언어와 표현

토론은 어떤 결정에 대해 긍정자(찬성자)와 부정자(반대자)가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이를 변호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토론의 언어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적인 언어와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의 기능으로 볼 때 기술적(記述的)·통달적(通達的) 용법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토론에 정서적(情緒的) 표현, 말을 바꾸면 표현적(表現的) 용법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을 납득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는 표현적 용법보다 기술적 용법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다. 화를 내거나 감정에 쏠린 표현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고 비논리적인 표현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선 주장은 조리에 맞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연역적 및 귀납적 추리가 올바로 되어야 하겠고, 논거가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용되는 예도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때 그 주장은 허물어지고 만다.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의 예

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이는 안토니우스와 브루투스의 논전으로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브루투스가 말한 데 대해 안토니우스가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브루투스 군은 시저는 야심을 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브루투스 군은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시저는 일찍이 많은 포로를 로마에 끌고 왔을 때 그에 대한 상금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모두 국고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야심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보겠습니까?

시저는 일찍이 빈민이 기아에 혜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심은 좀더 냉혹한 인간이라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브루투스 군은 야심을 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브루투스 군은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었을 것입니다. 류바갈 제일(祭日)에 나는 세 번이나 시저에게 왕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세 번 다 그것을 사양 하였습니다. 이것이 야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브루투스 군은 야심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투스 군은 실제로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브루투스 군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는 한도의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

셋째, 사실에 근거한 논박을 한다.

토론에서 논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논점에서 벗어난 주

장이거나 반박을 위한 반박이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주장을 내용면에서 고찰하여 논박할 점을 찾아내야 한다. 논박은 질문을 하거나(질문법), 주장의 허점이 드러나게 하거나(마각법), 상대방이 말하지 아니한 나머지를 들어 공격하거나(잔여법), 비논리적인 점을 지적하거나(자가당착법), 상대방의 주장을 역이용하는(역이용법) 등 토론의 장면에 어울리는 방법을 골라 논박하도록 해야 한다. 논박을 위한 착목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①상대방의 주장은 성급한 결론에 입각한 것은 아닌가?
- ②상대방이 인용한 숫자나 통계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 ③상대방은 말로만 속이고 구슬리는 것은 아닌가?
- ④감정이나 선입감에 호소하거나, 마구 권위자를 끌어들이거나, 그 밖에 언어의 마술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 ⑤상대방의 주장이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는 일은 없겠는가?
- ⑥스스로 조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⑦딜레마에 빠뜨릴 함정은 없는가?
- ⑧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쪽 주장에 유리하게 쓸 곳은 없는가?

그리고 논박은 다른 주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해석하는 ‘논해(論解)’의 성격을 지니도록 할 것이요, 논쟁이나 쟁론에 떨어지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한다. 싸움을 하게 되면 의견의 일치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알기 쉬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어렵지 아니하고 개념이 분명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개념을 규정하느라고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바르고 순화된 말을 사용한다.

토론은 단 둘이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중을 앞에 둔 토론회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은 올바른 표준어이어야 하고, 순화되지 않은 비속한 언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토론자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일어나 토론 아닌 논쟁이나 쟁론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섯째, 스포츠맨십을 발휘한다.

정정당당하게 신사적 표현을 한다. 비방, 흑색 선전, 비굴함, 우월감 과시 같은 표현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일곱째, 언어의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다.

논증을 필요로 하는 토론에서는 표현적·정서적 용법이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사고 능력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닌 설득의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여 인간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설득이란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이나 태도에 찬성하고 이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문제에의 주의-홍미-이해-심적 태도의 변화-행동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에 유의할 일이다.

3. 개선해야 할 언어와 표현

토론에서 전면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옳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주장도 겸허하게 듣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자기의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른 설로 대체해야 할 것은 대체함으로써 쌍방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토론은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토론의 성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언어와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논점에서 벗어난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논점에서 벗어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자기 설만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과 이가 맞지 않고 논점이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토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토론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논쟁에서 이러한 논점에서 벗어난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더구나 그 글이 그 제목인 무슨 ‘과학적’ 운운과는 전연 상반되는 비‘학적’(非‘學的’)태도, 또 그 부제와도 아주 관련이 없는 글 – 그래 장문(長文)의 내용 어느 것이 <고전 문학의 해외 진출에 답함>인가? 도대체 그것이 기쁘단 말인가? 배가 아프단 말인가? 희희! <양주동, 희희기-중상·허구·위학(僞學)>

둘째, 비논리적, 비논증적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토론의 주장은 지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을 거쳐야 한다. 논리를 비약하거나, 모호한 수사로 쟁점을 호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서는 상대방이나 청중을 지적으로 납득시키거나 설득하지 못한다. 1950년대에 소설 「자유부인」을 놓고 벌였던 황산덕 교수와 작가 정비석 씨의 유명한 논쟁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사 홍순엽 씨는 황산덕 교수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공격하고 있다.

황 교수는 소설 「자유부인」을 대학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짓고 그것이 근거 없이 대학의 위신과 그 대학에 의하여 건설될 민족 문화의 권위를 모욕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만 작품 「자유부인」의 그 무엇이 대학에 대한 침략이 되고 대학의 위신과 대학에 의하여 건설될 민족 문화의 권위를 모욕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문학의 문외한인 나로서는 그 작품의 문학적 가치의 유무 여하를 논할 처지에 놓여 있지도 않고, 또한 이것을 논하고 싶은 의향도 없습니다마는 장 교수가 박이라는 직업 여성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에 끌리었다고 해서 이것이 대학 교수를 모욕하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침략이 되는 것이고, 장 교수의 부인 오 여사의 무궤도적인 탈선 행동을 묘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대학의 위신과 대학에 의하여 건설될 민족 문화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洪淳暉,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를 읽고->

셋째,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논박을 당하게 되면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토론의 예절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피해를 보고, 토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남을 비방 중상하거나, 공격적 욕설을 퍼붓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문학은 그 속에 에스프리, 문학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필자 주) 귀하의 「자유부인」은 단연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자유부인」이 전쟁하는 한국의 신문 지상에 연재됨으로써 철없는 청소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더구나 근거없이 대학의 위신과 그 대학에 의하여 건설될 민족 문화의 권위를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진정한 문학을 좀먹고, 문학에 대한 일반 인식을 악화시키는 귀하야말로 ‘문학을 전연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히어 저속 유치한 예로 작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賊)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어서 본인은 수많은 문학 전공 대학생과 권위 있는 문학가로부터 귀하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자유부인」을 비난하였을 뿐 문학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일러둡니다.』 <黃山德,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항의에 대한 답변->

이와는 달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우월성을 과시하는 표현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그건 또 차치하고 그래 ‘하야(河野)’가 그 무슨 대단한 우리 국어의 대가이며 사뇌가(詞腦歌)와 이두문(吏讀文)의 권위자란 말인가? 내가 일찍 ‘국보(國寶)라 자칭한 적이 없으나 그의 글에 하도 자꾸 나를 ‘국보’(무론 야유적으로)라 하니 나도 한번 그 말을 자칭해 써 볼까. 제 나라 ‘국보’와 그의 호한(浩瀚)한 역사의 대저는 기를 쓰고 무거운 중상으로 내려 깎으면서, 그것을 위하여는 ‘적’국의 일개 minor 학도의 편언척자(片言隻字)를 그야말로 무슨 대종사(大宗師) 대학자의 권위 있는 ‘어록 교서(語錄敎書)’인 양 삼가 인용하는 꼴이 란…… 어허, 희희! <양주동, 희희기>

넷째, 비속어나 은어 등의 사용을 삼간다.

감정적 표현과 함께 비속어의 사용은 인격을 손상시킨다. 신사도를 지켜 점잖은 말로 논리적인 응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불행하게도 동방 예의 고토(故土)에 있어서 변(卜)과 같은 패역악질(悖逆惡質)이 우리들과 땅을 같이한 것은 전 민족의 오점이며 세대(世代)의 치욕이라 하겠다. <전국유림대회, 번영로(卜榮魯)의 선성(先聖) 모욕에 대한 성토문>

다섯째, 언어의 마술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토론의 언어는 기술적(技術的)인 용법의 표현을 할 것이요, 감화적(感化的) 용법의 표현을 삼갈 일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외재적(外在的) 언어를 사용할 일이요, 높은 추상의 사다리를 올라간 내재적(内在的)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명명, 분류, 동일시, 비유, 경향적(傾向的) 표현 및 지령적 표현 등에 특히 주의할 일이다. 언어의 마술을 피우고 있는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우자(右者)의 <불혹(不惑)과 부동심(不動心)>이라는 제목하에 ‘위대한 위선자인 공자(孔子)의 사십불혹(四十不惑)과 절세의 데마고그인 맹자(孟子)의 사십부동심(四十不動心)’ 운운의 광언패설(狂言悖說)에 대하여 본 회로서는 독서문맹자인 무지몰각한 일개 우부(愚夫)의 문자 유희인 것이므로 일소에 부활 바이나, 그가 소위 문필인으로 과거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이었음과 아울러 5백만 유림(儒林)의 전통적인 사상과 윤락한 사회 도의의 양양을 고려하여 필주성토(筆誅聲討)로써 공허한 논리가 그의 무지 천견의 소치임을 약간 지거(指舉)하여 선성(先聖)의 존엄성과 유교 정신의 재진홍을 천명케 하고자 하는 바이다. <전국유림대회, 변영로의 선성 모욕에 대한 성토문>

4. 결 어

토론은 언어 사용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민주 사회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은 언어의 형성기인 국민

학교 졸업 단계에까지 그 기본을 익히고, 국민학교 졸업 후인 언어의 발전기에는 교정, 교육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교육은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피해져 정착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도 하루 속히 정착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우선 가정에서 언어 교육이 피해져야 한다. 지난날에는 그래도 가정 교육을 통해 언어 예절을 익히고 바른 말을 익혔다. 그런데 요사이는 내어놓은 망아지같이 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어의 예절을 모르고, 넓은 의미의 바른 말을 모른다.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는 또박또박 제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는 훈련을 쌓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말로 재현하게 하는 재현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언어의 기능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특히 음성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제5차 교육 과정 이후 「말하기·듣기」 교과서가 개발되어 이미 그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된다. 우선은 정확한 발음을 익히게 할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말하기를 익힐 것이다. 그리고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폄는 화법 학습을 하여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토론의 언어와 표현은 이러한 토론의 학습과 생활화 과정에서 차츰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때 언어 예절과 바른 말이 아울러 지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의사

를 개진한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언어로 대처하는 일을 자제하며, 유머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토론과 회의 진행 방법

이 진 종

1. 회의 운영의 일반적 특성

(1) 회의의 뜻

회의(會議)란 넓은 뜻으로는 언어(言語)에 의한 의사 전달(意思傳達) 또는 교류(交流)를 목적으로 하는 교담, 대담, 좌담, 협의, 토론회, 공청회, 친목회 등 인간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집회(集會)를 말하며, 그 성격(性格)도 다양(多樣)하다.

(2) 회의의 정의(定義)와 종류

① 회의의 정의

첫째, 회의는 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다.
둘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등(平等)을 본질로 한 인간 중심의 모임이다.

셋째, 같은 장소(場所)에 모인다.
넷째, 각자의 지식, 경험, 사상, 의견을 상호 이해시키고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 서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교육 과정(教育課程)이다.

다섯째,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過程)이다.

② 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는 조직면(組織面)과 성질면(性質面)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직면으로 보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사 소통의 과정을 원만하게 거쳐 전체 의사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 회원이면 가능하지만,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을 때도 있다. 즉, 회의의 종류는 회의 구성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회원 수가 적어서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총회(總會)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면 회원 수가 많아 도저히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 회원이 대표를 뽑아 대의원 회의(代議員會議)를 조직하고, 또 회의에서 심의할 주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총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이 몇 사람의 대표자 또는 전문 위원에게 맡길 수 있는 의제이면 총회 아래 위원회(委員會) 또는 이사회(理事會)를 두어 회의를 위임하게 한다.

둘째, 성질면(性質面)으로 본 회의는 어떤 날짜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미리 정하여 개회하는 정기 회의(定期會議)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열 수 있는 임시 회의(臨時會議)가 있다. 즉, 일상 생활의 회의는 조직상(組織上)의 분류에다 성질상(性質上)의 분류를 덧붙여서 분류하게 되는데 보통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라고 부르고 있다.

(3) 회의의 기능(機能)

첫째, 전체 의사(全體意思)를 결정(決定)하는 기능, 둘째, 의사 소통(意思疏通)의 기능, 셋째, 교육 훈련(敎育訓練)의 기능, 넷째, 고문의 기능이 있다. 이 네 가지의 기능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회의는 올바른 의미의 ‘회의’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회합’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사(議事) 원칙과 의사법(議事法)

의사 원칙은 크게 일반 사회 집단 및 친목 단체, 직장 등에서 실시될 수 있는 일반 의사 원칙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회의의 일반 원칙

첫째,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둘째, 발언 자유(發言自由)의 원칙

셋째, 과반수(過半數)의 원칙

넷째, 일의제(一議題) 원칙

다섯째, 회원 평등(會員平等)의 원칙

여섯째, 폭력 사용 금지의 원칙

일곱째,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② 입법(立法) 과정의 특수 원칙

국회관계법령선집(國會關係法法令選集)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첫째, 회의 공개(會議公開)의 원칙

둘째, 회기 계속(會期繼續)의 원칙

셋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넷째, 발언(發言) 계속의 원칙

다섯째, 발언 횟수의 제한 원칙

여섯째, 발언 시간의 제한 원칙

2. 회의의 지도력

(1) 의장(議長)이 지녀야 할 태도

단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각각 그 단체의 습관에 따라 회장(會長), 의장(議長), 사회자(司會者), 총재(總裁) 등으로 부른다. 그 중 조직이나 단체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의사 진행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장(議長)이라고 한다. 의장은 총회나 이사회 의 사회자가 된다. 따라서 의장은 단체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량도 필요하다. 회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장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장은 회의 규정에 밝고 덕망이 높아서 어느 누구도 회의장에서 난폭

한 행동을 못 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장(議長)이 지녀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 진행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회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셋째, 위엄이 있어야 한다.

넷째, 예의가 밝아야 한다.

(2) 의장(議長)의 주의 사항

첫째, 회원의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동일 회기 내에 표결에 붙인 의안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넷째,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유도 신문(誘導訊問)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편파적(偏頗的)이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괴벽(怪癖)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말이 많으면 안된다.

아홉째, 올바른 결론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열째, 정시(定時)에 개회(開會)하고 정시(定時)에 폐회(閉會)한다.

(3) 의장(議長)의 임무

회의는 의장의 수완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된다. 의장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진행중에 첫째,

회의 규칙(會議規則)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둘째, 개회에서 폐회까지 항상 공평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회의 진행중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회 시간을 염수해야 한다.

둘째, 발언자를 지명(指名)해야 한다.

셋째, 각종 선언(宣言)을 해야 한다.

넷째,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발언의 질서를 유지한다.

다섯째, 발언을 권유한다.

여섯째, 의제(議題)를 파악한다.

일곱째, 의장이 발언을 한다.

(4) 의장(議長)의 직권

의장은 회의 질서 유지와 회의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능률적인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회의 진행상의 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이 주어져야만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첫째, 불법(不法) 및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는 권한

둘째, 발언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셋째, 퇴장(退場)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넷째, 토론 종료(討論終了)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

다섯째, 회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폐회 선언할 수 있는 권한

여섯째,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경우의 결정권

일곱째, 회의중 휴식(休息)과 휴회(休會) 선언

3. 회의와 회원

(1) 회원으로서의 자격

회의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개인으로서는 의장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원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을 성공시켜려는 태도에 따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회식 회의에 참가하여 회원으로서 구실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밖에 회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회의의 온갖 문제에 대하여 여하한 것에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일 것.

둘째, 문제에 대하여 똑똑히 자기 생각을 발표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셋째, 일단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한 사항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일 것.

(2) 발언의 요령

① 발언(發言)의 주의점

발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회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 다수의 회원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상, 회의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발언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의장은 허가 없이 발언하는 회원에게 발언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회원의 발언중에는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의 발언중에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발언중인 사람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발언중’이라고 외쳐서 그를 제지할 수 있다.

셋째,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발언은 의사 진행상의 의제에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의제에 관계가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단계를 넘어서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

② 제안 설명(提案說明)의 요령

제안 설명은 회원들에게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에 찬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특히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자기 제안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둘째, 현재 상태로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유를 실제 근거를 들어 제시하면서 제안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셋째, 자기의 제안이 표결되어 실행하면 그 문제는 어떠한 상태로 개선된다는 결과를 설명해 준다.

넷째, 자기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한다.

다섯째, 그 단점을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적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요령있게 하고서 자기의 제안에 찬성해 주기를 호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친다.

③ 의견 진술의 요령

제안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이란 과정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토론할 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요령이 있다. 많은 회원들은 발언자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론부터 먼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들은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 결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업무가 바빠 너와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토론할 때에는 제안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역산법(逆算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발언은 의장을 향해

원탁 회의(圓卓會議)라든지 훈련 회의(訓練會議) 따위에서는

그렇지도 않지만, 의회식(議會式) 회의에 있어서는 발언자는 언제나 자기 좌석에서 일어나 의장을 향해 발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발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회의장의 구조나 속기 기술(速記技術) 등 실질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발언이 극히 간단한 것이나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자기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⑤ 감정에 흐르지 말 것

토론이 격렬해져서 가열되면 감정에 흘러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한 토론이 전개되기 힘들다. 발언자는 상대방에게 자극적인 언사는 피해야 하며 듣는 사람도 자중해야 한다.

⑥ 의제에 대한 사전 연구

회원은 사전에 전달된 소집 통보서에 따라 의사 일정을 확인한 후 회의에서 토의될 의제에 관하여 사전에 연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의제를 연구 검토한 뒤 회의에 임하면 회의가 즉흥적으로 처리됨을 방지하고 의사 소통, 교육 훈련, 전체 의사의 결정이란 회의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민주적 회의로 이끌 수 있다.

⑦ 메모를 이용한다.

자기의 발언 내용을 메모지에 요령 있게 정리한 후 발언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는 실수없이 충실히 발언할 수 있다. 다른 회원의 발언 내용을 들을 때도 그 요점을 메모하여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3) 회원의 임무와 책임

① 의제에 대하여

첫째, 미리 알려진 의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둘 것.

둘째, 필요할 때는 자기 발언의 내용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

셋째,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 둘 것.

넷째, 찬반 혹은 대안을 반드시 생각해 둘 것.

② 참석자에 대하여

첫째, 의견 대립을 인간 관계에 결부시키지 말 것.

둘째, 발언 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빼앗지 말 것.

셋째, 개인 공격이나 감정적 발언으로 다른 참석자를 불쾌하게 만들지 말 것.

넷째, 체면이나 입장 때문에 타협하거나 영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할 것.

③ 진행에 대하여

첫째, 진행에 간접적인 무언의 협력을 아끼지 말 것.

둘째, 의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노고를 기억할 것.

셋째, 진행의 책임을 의장과 함께 질 것.

넷째, 예정된 시간에 회의를 마치는 것은 의장만의 책임이 아님을 기억할 것.

④ 결론에 대하여

첫째, 의장이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같이 확인될 때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말 것.

둘째, 결론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남기지 말고 이해할 것.

셋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것.

넷째, 다음 회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

다섯째, 과제 배분에 대해 적극성을 지니고 협력할 것.

⑤ 책임에 대하여

첫째,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둘째, 공동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것.

셋째, 건전한 태도로서 협조자가 될 것.

넷째, 객관적이며 공정성을 기할 것.

다섯째, 타인의 말은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들을 것.

여섯째, 공통적인 해결에 책임을 질 것.

일곱째,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할 것.

여덟째, 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

아홉째, 반드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이끌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것.

4. 회의의 준비

(1) 회의 준비의 필요성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이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결과를 얻기 쉽다. 하물며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회원이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몇 배의 준비가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성공은 준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 두는 것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의장에게 회의 진행에 자신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여 준다.

준비를 게을리하면 회원들도 회의중 불쾌해서 의장의 능력을 낮추어 보고 불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항상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회의의 완벽한 준비는 회의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회의 준비서 작성

의장은 개최될 회의에서 무엇이 심의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연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회의 진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으므로 실제 회의에 부딪혀서 결정이나 해명을 망설이는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예측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때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장은 심의된 안건에 대한 골자(骨子)와 그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심의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추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건에 따라 회의가 총회(總會)든지, 이사회(理事會)든지, 임원회(任員會)든지, 정기 월례회(定期月例會)든지 간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 회원 수, 토의 주제, 회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계획하여야 하므로 이런 사항을 메모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 회의 준비에 편리하다. 이것이 회의 준비서이다. 회의 준비서에는 대개 아래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준비서는 본래 회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장 개인과 임원의 준비 메모로서 작성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회의의 종류
- ② 개회 일시
- ③ 주요 토의 안건
- ④ 장소
- ⑤ 참석 예정자 수

⑥회의용 자료

⑦회의 소요 시간

(3) 회의의 소집

소집(召集)이란 전 회원에게 회의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일 및 시각에 지정 장소에 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집은 기간을 두고서 의제와 함께 사전에 통고해야 한다.

소집 통지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공식 문서로 발송한다.

①회의의 종류

②참석자 및 참석자의 범위

③일시 및 소요 예정 시간

④주요 토의 주제 및 부수 사항

⑤장소

⑥준비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

⑦기타 회비(會費) 및 준비물

소집 통지서는 참가할 회원에게 무엇 때문에 모인다는 것을 알리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

(4) 회의 장소의 준비

회의장의 효과는 뜻밖으로 크다. 회의장은 출석자 전원 사이의 집단 심리를 형성하는 외적 자극을 줄 수 있고, 참석자의 기

분과 피로에 영향을 미치고, 채광(採光), 음향(音響) 등의 조건에 따라서 생리적인 효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회의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참석 예정자 수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넓이의 장소를 선택한다.

둘째, 광선과 조명이 적당하여 회원들이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토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셋째, 실내 온도와 음향 효과 등 주위의 소음이 없고 통풍이 잘 되어 냄새가 나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넷째, 좌석의 이상적인 배치형은 원탁형으로 발언자의 모습을 잘 보이게 배치하고 회원수가 많을 때는 교실형으로 배치하여 발언대를 만들어 발언자를 주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회의장은 회원 이외의 사람이 드나들 장소이면 되도록 통용문 하나만 사용하고 통용문에는 반드시 ‘회의중’이라는 글을 붙여 회의와 관계없는 사람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다.

여섯째, 참석자에게 필요한 회의 자료, 필기 용구, 음료수 등을 책상마다 비치하여 도중 불필요한 출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케도 및 케도걸이, 칠판, 칠판닦이, 분필, 영사 시설, 환등, 명찰, 전화 등을 준비하여 회의 진행중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회의 진행의 일반적 형식

(1) 의사 일정(議事日程)

의사 일정이란 한 회기에 심의해야 할 일과 그 일의 처리 순서를 말한다.

(2) 회의 진행의 순서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①개최 ⑦출석 점호(정족수 확인)

 ⑨개회 선언(선포)

②전(前) 회의록(의사록) 통과

③의장 인사

④특별 일정

⑤서기, 회계의 보고

⑥임원회 및 위원회의 보고

⑦전 회의에서 심의 미결된 의사

⑧새로운 의사

⑨폐회

가. 개회(開會)

개회란 예정된 시각이 되면 종이나 스피커 육성으로 회의장 뿐만 아니라 주위의 시설에 있는 회원에게 개회 시각이 되었음

을 알림으로써 회의장에 모이게 한다. 이때 회원은 회원석에, 임원은 임원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①출석 점호(정족수 확인)

회원이 출석하면 서기는 회원 명부를 호명하는 출석 점호를 실시한다. 출석 점호의 이유는 첫째, 회원 자격을 심사하고, 둘째,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셋째, 참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표결 성립이 되는 기준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②개회 선언

출석 점호의 결과 회원의 출석이 규약에 따라 정족수가 되면 의장은 “지금부터 ○○ 회의를 시작합니다.” 하고 개회를 선언 한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도 회원이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流會)를 선언한다. 그 뒤 출석한 회원끼리 간담회(懇談會) 따위를 열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회의로서의 의결(議決)은 할 수 없다.

나. 전 회의록(의사록) 통과

개회 선언을 하면 이어서 전 회의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한다. 낭독이 끝나면 의장은 회원을 향하여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 그리고 정정(訂正)할 의견은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견이 회원으로부터 나오든지 잠시 동안 있어도 아무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전 회의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된다.

만일 잘못 기록된 내용이나 누락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회원은 그 항목을 지적하여 정정할 것을 요청한다. 의장은 전 회의 시간에 회의 운영의 사실에 비추어 그 정정 요구가 타당할 때에는 회원의 요구와 같이 정정하고 나서 회의록 통과를 선포하고, 그 정정 요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회의 운영의 사실을 지적하여 정정을 거부한다.

의장의 거부를 회원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회원은 회의록 정정 동의를 제안하고 표결에 붙여서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록이 통과되면 의장과 서기는 회의록 지정 자리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의장 인사(議長人事)

기관, 단체의 대표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의장이 된다. 의장은 어느 모로 보나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동의를 낼 수도 없고, 토론에 참석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인사를 통하여 회의에 대한 의장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지난 회의와 현 회의와의 사이에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문제가 있으면 회원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특별 일정(特別日程)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그 회기에서 당장 심의하지 않고 기한부 연기 동의를 내서 다음 번 회의로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순서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

기 회의중에서 의장 인사 후라고 명시되었으면 의장은 우선적으로 특별 일정(特別日程)으로 돌려 두었던 의안의 심의를 선언한다.

마. 서기 보고(書記報告)와 회계 보고(會計報告)

① 서기의 문서 보고

그 회의의 심의 안건과 연관되는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이때 이것을 전체 회원에게 승인을 얻는 시간이며,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보류하여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② 회계의 보고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에 관한 보고이며, 보고서는 승인된 후에 감사에 회부한다.

바. 임원 회의(任員會議) 보고

임원회나 각종 위원 회의의 결정 사항을 임원 회의의 대표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위원회나 임원회의 보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한 회의의 보고가 처리된 후에 다음 회의의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에 있어서 보고자가 특히 조심하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보고 내용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서는 안된다.

둘째, 보고 내용은 임원회나 위원회의 결과 및 경과인데, 결과에 대하여는 특히 분명히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심의 미결(審議未決)된 의사(議事)

임원 회의, 각종 위원 회의의 보고에 이어서 부득이 중단되었거나 기한부 연기 동의(延期動議)에 의해 현 회의로 미루어졌던 동의를 심의한다. 이때에 의장은 그 동의 내용을 알린 후 의제로 삼음을 선포한다.

아. 새로운 의사(議事)

위와 같은 순서로 표결이 안 된 안건 즉 미결 안건이 처리되면 그 회의가 목적하고 있던 새로운 의안의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새로운 의안은 이미 소집에서 통지되었던 일로 제한되어 있다.

새로운 의안 제출에서 표결 결과 선포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언권을 얻는다.

둘째, 동의를 제안한다.(원동의)

셋째, 동의를 지지한다.(재청)

넷째, 동의 채택을 선언한다.(의제 상정)

다섯째,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

여섯째, 질의한다.

일곱째, 토론한다.

여덟째, 수정 동의한다.(개의)

아홉째, 재수정 동의한다.(재개의)

열째, 토론을 종료하고 선언한다.

열한째, 표결 한다.

열두째,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이상의 회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발언권(發言權)을 얻는다

어떤 회의에서나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거수 및 기립을 하고 “의장!”하고 큰소리로 부르면 된다. 의장은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회원이 있으면 발언을 허락해야 한다. 의장의 허락이 있으면 그 회원은 발언권을 얻게 된다.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원의 발언중에 고함을 치거나 의장석으로 뛰어오르거나 하는 회원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회의 진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회원은 발언권을 얻을 자격이 없다.

② 동의를 제안한다(原動議)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는 것은 동의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발언권을 얻으면 동의를 될수록 간략하게 추려서 제안한다. 동의 제안은 “나는 …하기를 동의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동의가 복잡하고 내용이 길 경우 의장이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의를 지지한다(再請)

동의가 제출되고 나서 의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의 찬성 유무를 묻는다. 즉 “방금 ○○○ 회원께서 …을 하자고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의제로 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또는 재청)이오!”라고 소리치면 된다. 이 지지 찬성이란 동의를 제안한 사람 외에 적어도 한 사람이 그 동의에 관심을 가졌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의 능률상 매우 중대하다.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그 동의를 의제로서 상정할 수 없다. 의제로서 상정될 수 있는 찬성자 수는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대개 참여 회원 30명의 경우 제안자 외에 2명, 30명 이상 60명 이하인 경우 제안자 외에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예외로서 전혀 지지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④ 동의 채택을 선언한다(議題의 上程)

동의에 대한 지지 찬성이 있으면 의장은 곧 “지지 찬성이 있으므로 ○○○ 회원이 제안한 …을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상정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의제로 상정된다. 이 동의는 기본이 되는 동의이므로 원동의(原動議) 또는 주동의(主動議)라고 부른다.

⑤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提案理由說明)

동의가 의제로서 선포되면 의장의 지시로 제안자는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때 제안자는 제안한 것에 대하여 회원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대하리라고 생각되는 회원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⑥ 질의한다(質疑)

제안 이유의 설명이 끝나면 의장은 “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 회원을 향

하여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질문의 형식을 빌어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질의에서는 잘 모르는 점에 대한 질문만을 해야 한다. 질의는 3명으로 제한하고, 제안자(원동의)는 질의 내용에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참석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한다.

⑦ 토론한다(討論)

의장은 “이제 질문은 더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그 이상의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한다. 이때부터 회원은 동의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나 찬성의 의견을 발언하게 된다. 의장은 찬성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서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찬성자→반대자→찬성자’ 순으로 교대로 발언권을 주는데 대개 6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회의 규칙에 우대 의견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해진 대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찬부 양론이 토론되어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 동의, 긴급 동의, 특권 동의 등이 자주 나와 회의장이 혼란해지는 일이 없이 원활히 의사를 진행시키려면 토의를 규칙대로 행한다는 것과 동의의 순서를 올바르게 지킨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⑧ 수정 동의한다(改議)

토론 과정에서 찬성 발언의 경우를 보면, 동의를 무조건 찬성하는 자와 찬성은 하지만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 이

와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찬성자도 있기 때문에 수정 동의가 있게 된다. 수정 동의 또는 개의는 원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제안할 수 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지지 찬성자가 있으면, 의제 상정,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등 원동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⑨ 재수정 동의한다(再改議)

재수정 동의라 함은 수정 동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싶을 때 다시 수정 동의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수정 동의가 제안되어 상정되면 또 다른 수정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회의는 진전되지 않고 한 개의 의제로써 한없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수정안 다음에는 수정안을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⑩ 토론 종결을 동의하고(討論終結動議) 선언(宣言)한다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법에는 의장이 토론 종결을 제안하는 방법과 회원이 종결을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쪽으로 토론을 종결하든지 간에 의장은 최후의 발언자에게 결론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어 그 동안에 나왔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정리,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의장이 토론 종결을 제안할 경우, 대체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의장은 “대체로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으니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

니까?”라고 묻고 “이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있거나 침묵할 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회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낼 경우, 이는 회원의 권한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 가결이 성립되었을 때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⑪ 표결(表決)한다

의제에 대하여 토론이 종결되어 마지막으로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표결이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차이다.

표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묵락(默諾)에 의한 방법

둘째, 발성 및 박수에 의한 방법

셋째, 거수 및 기립에 의한 방법

넷째, 점호에 의한 방법

다섯째, 투표에 의한 방법

이상 다섯 가지의 표결 방법 중 동의의 성격을 잘 구별하여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동의를 상정하여 찬부를 묻고난 후 방법을 정해야 한다.

참고로, 표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의결 정족수(議決定足數)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표결의 순서는 재개의, 개의, 동의의 서열로 한다.

셋째, 표결시 찬, 반, 기권의 순으로 한다.

넷째, 표결의 발표 순서도 찬, 반, 기권의 순으로 한다.

역시 참고로, 표결을 결정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표결 결과 과반수니 3분의 2이상이니 하는 것은 가결(可決)인지 부결(否決)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수를 말하는데, 이 표결 결정수는 일반적으로 종다수결(從多數決) 및 절대적 다수결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종다수결(從多數決) 및 상대적 다수결(相對的多數決)은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쪽을 가결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절대적 다수결(絕對的多數決)은 둘을 견주어서 상대적 다수를 얻은 쪽을 가결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결의, 2/3결의 두 종류가 있다.

⑫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의장은 서기로부터 찬부의 인원 수를 보고 받고 기입을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장은 “○○○ 회원이 제안한 …하자라는 의안은 가(부)결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이상과 같이 하나의 동의가 복잡한 절차를 통해 가결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진행되는 것이다.

자. 폐회(閉會)

그날의 의사 일정을 종료하고 예정된 폐회 시간이 되었을 때 회원으로부터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없는 한 의장은 “이것으로 ○○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폐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차. 의사봉(議事棒)의 사용 방법

① 의사봉을 두드리는 목적(目的)

㉠ 개회 선언, 폐회 선언, 휴회 및 휴게 선언, 속회(續會) 선언, 표결 결과 선언 등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決定) 및 결과 등의 집단 합의(集團合意)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사봉을 두드린다.

㉡ 회의장(會議場) 안이 소란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전체 회원에게 주의(注意)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의사봉을 사용한다.

㉢ 전체 회원이 합의된 사실 앞에 승복(承服)하겠음을 다짐하는 요식 행위(要式行爲)로서 의사봉을 두드린다.

②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이유

의사봉을 두드린다는 것은 회의가 소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들이 결정한 사실 앞에 공히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전체 회원의 합의, 가결된 의안, 부결된 의안들은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요식 행위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첫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체 회원이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의장이 잘못 발표하고 있거나 않은지, 이의(異意)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두 번 더 의사봉을 두드리면 본 결정 앞에 전체 회원은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① 두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앞으로 한 번만 더 의사봉을 두드리면 의결된 사실은 확정(確定)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테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② 세번째 의사봉을 두드리는 뜻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이 없으므로 전체 회원의 뜻을 같이하여 본 의결 앞에 승복하겠음을 엄숙히 맹세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③ 의사봉을 두드리는 속도(速度)

의사봉을 두드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는 안 되고 한 번 두드리고 나서 장내를 살펴보고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두번째 의사봉을 두드리고, 이의를 제출하는 회원이 없으면 세번째 의사봉을 두드려야 한다.

빈 면

〈필자 약력〉

전영우(全英雨)

1934년 생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문학 박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장 역임(1980년 ~ 1984년)

현 수원대 국문과 교수, 인문대학장

저서 '스피치 개론', '표준 한국어 발음 사전' 외 다수

박갑수(朴甲洙)

1934년 생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현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저서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의 오용과 순화', '방송언어론' 외 다수

이진종(李珍鍾)

1948년 생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졸업

현 한국평생교육원 원장, 한국환경교육학회 상임이사

저서 '나라 사랑 365일' 외 다수

바람직한 토론페이지

발행일 : 1995년 12월 20일

발 행 : 문화체육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82-1

(우) 110-703

(전화) (02)720-4926/722-1328

(전송) (02)737-7357

인쇄 : (주) 범신사

(전화) (02) 720-9786

정간위심의필 95-13-6-59

ISBN 89-7820-022-2 03800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100-86510-47-9505

□ 표지 저자는 문화체육부에서 개발한 혼민장을 채워.